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419
----------	-------

발의연월일 : 2026. 4. 17.

발 의 자 : 서영교 · 김한규 · 부승찬
복기왕 · 전진숙 · 송재봉
임미애 · 김주영 · 박균택
정준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가족문화운동 전개,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그런데 현재 시·군·구 단위로 설치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가족센터의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일부 시·도에 광역가족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이러한 광역가족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가 현행법에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광역가족센터의 원활한 관리·지원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음.

이에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가족센터에 대한 광역가족센터의 지원·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광역가족센터의 설치·운영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덧붙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가족센터 및 광역가족센터의 설치·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족지원사업을 뒷받침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광역가족센터에 대한 사업수행 실적 평가를 통하여 감독·지원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광역가족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제35조,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및 제37조).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가정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7항제7호 중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를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 제35조의3에 따른 광역가족센터”로 하고, 같은 항 제9호의2 중 “제35조의4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가족센터”를 “제35조의5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센터 및 광역가족센터”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을 “특별자치시장·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으로,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가족지원 서비스의 제공, 가족지원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자료제공”을 “자료제공, 위기가족긴급지원 업무의 수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⑤ 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5조의2제1항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을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가족센터”를 “가족센터(이하 “가족센터”라 한

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가족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를 각각 제35조의4 및 제35조의5로 하고, 제3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35조의4(중전의 제35조의3) 중 “센터 또는 가족센터”를 “센터, 가족센터 또는 광역센터”로,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센터, 광역가족센터”로 한다.

제35조의3(광역가족센터)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센터 및 가족센터의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광역가족센터(이하 “광역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광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가족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가족지원 서비스 실태조사·연구 및 서비스 개선방안 마련
3. 가족지원 서비스 관련 지역사회 시설·인력 또는 그 밖에 인프라 등 자원에 대한 조사 및 자원 연계체계의 구축·운영
4.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홍보
5. 센터 및 가족센터 간의 위기가족긴급지원 업무 연계·조정 및 지

원

6. 센터 및 가족센터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연수 및 직무 스트레스 상담·치료 등 지원

7. 그 밖에 센터 및 가족센터의 업무 관리·지원을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광역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광역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의5(중전의 제35조의4)제1항 중 “센터 및 가족센터”를 “센터, 가족센터 및 광역센터”로, “센터와 가족센터의 감독 및 지원”을 “센터, 가족센터 및 광역센터의 감독과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실적 평가에 관한 업무를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7조제1항 중 “제35조의2”를 “제35조의4”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수행실적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수행실적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광역가족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설치된 광역가족센터는 제35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광역가족센터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4조의2(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① ~ ⑥ (생략)</p> <p>⑦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p> <p>1. ~ 6. (생략)</p> <p>7. 제35조의 건강가정지원센터, <u>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u>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사업 관리 및 종사자 교육훈련</p> <p>8.·9. (생략)</p> <p>9의2. <u>제35조의4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가족센터</u>의 사업수행실적 평가 지원</p> <p>10.·11. (생략)</p> <p>⑧ ~ ⑩ (생략)</p> <p>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 ① <u>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u>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p>	<p>제34조의2(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p> <p>⑦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 <u>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u> <u>제35조의3에 따른 광역가족센터</u>----- ----- ----- -----</p> <p>8.·9. (현행과 같음)</p> <p>9의2. <u>제35조의5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센터 및 광역가족센터</u>-----</p> <p>10.·11. (현행과 같음)</p> <p>⑧ ~ ⑩ (현행과 같음)</p> <p>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 ① <u>특별자치시장·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u></p>

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⑤ 센터의 운영은 성평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생략)

제35조의2(가족센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생략)

<신설>

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가족지원 서비스의 제공, 가족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자료제공, 위기가족긴급지원 업무의 수행-----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⑥ (현행과 같음)

제35조의2(가족센터) 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가족센터(이하 “가족센터”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가족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

<신 설>

<신 설>

무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
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
족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35조의3(광역가족센터) ① 특별
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
자치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센
터 및 가족센터의 업무를 통합
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
하여 광역가족센터(이하 “광역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광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가족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가족지원 서비스 실태조사·
연구 및 서비스 개선방안 마
련

3. 가족지원 서비스 관련 지역
사회 시설·인력 또는 그 밖
에 인프라 등 자원에 대한 조
사 및 자원 연계체계의 구축

· 운영

4.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식개
선 및 홍보

5. 센터 및 가족센터 간의 위기
가족긴급지원 업무 연계·조
정 및 지원

6. 센터 및 가족센터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연수 및 직무
스트레스 상담·치료 등 지원

7. 그 밖에 센터 및 가족센터의
업무 관리·지원을 위하여 성
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광역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④ 광역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
무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
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광
역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35조의3(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센터 또는 가족

제35조의4(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센터, 가족센터 또는

센터가 아니면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5조의4(사업수행실적 평가)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센터 및 가족센터의 사업수행실적을 3년마다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해당 평가결과를 센터와 가족센터의 감독 및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신 설>

② (생략)

제37조(과태료) ① 제35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생략)

광역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센터, 광역가족센터-----
-----.

제35조의5(사업수행실적 평가) ① -----센터, 가족센터 및 광역센터-----
-----센터,
가족센터 및 광역센터의 감독과 지원-----.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실적 평가에 관한 업무를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37조(과태료) ① 제35조의4-----
-----.

② (현행과 같음)